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발행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2021년 8월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참고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Ⅰ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할

| 구 분 | 적용 사업장 | 선임대상 / 자격 | 주요 업무 |
|--------------------|--|-------------------------|--|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15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상이 - (건설) 20억 원 ↑ - (제조) 50명 ↑ - (서비스업, 농업, 어업 등) 300명 ↑ - (기타) 100명 ↑ * 공장장, 현장소장 등 | 실질적 사업장 총괄·관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
| 관리 감독자 (1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 부서장, 직장·반장 등 중간관리자 | 생산 관련 직원(업무) 지휘(감독) 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작업)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 안전 관리자 (17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상이 - (건설) 80억 원 ↑ - (제조 등) 50명 ↑ - (부동산, 사진처리업) 100명 ↑ * 건설 120억 원 ↑, 제조 등 300명 ↑ 사업장은 전담자 선임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 보건 관리자 (18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상이 - (건설) 800억 원 ↑ * 토목공사는 1,000억 원 ↑ - (제조 등) 50명 ↑ * 300명 ↑ 사업장은 전담자 선임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

| | | | |
|--------------------------------|--|--|---|
| 산업 보건의 (2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과 동일 *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 직업환경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건강장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
|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1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업종 20~49인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 * 제조,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 등 업종 | 안전·보건 관리자 자격 또는 교육 이수 (겸임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



안전보건체계 관리하는 최고안전책임자 선임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CEO는 현장에 직접 나가 사고 원인을 파악했다. 그동안 발생했던 중대재해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떨어짐’, ‘물체에 맞음’ 사고였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눈에는 보이지 않던 구조적·기술적 문제로 빚어진 사고였다.

찾아내기 어려운 위험요인을 없애려면 높은 수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했다. CEO가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건 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이하 CSO) 선임이다.



최고안전책임자 CSO(Chief Safety Officer)란?

기업의 사고 예방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근로자, 시설 및 자산의 물리적 보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기업 안전’의 총책임자

CEO 바로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 CSO는 안전보건체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다. CSO 선임과 함께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충하고 담당 분야를 세분화·전문화하여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했다.

현재 CSO 산하 3개 팀(안전보건팀, 안전점검팀, 안전혁신학교)에 35명, 각 부문 및 사업본부에는 5개 팀 16명, 113곳의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316명과 보건관리자 78명이 안전보건을 담당하고 있다.

‘안전점검’, ‘장비점검’ 2개 파트로 구성된 ‘안전점검팀’은 15명의 인원이 현장의 크고 작은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책임지고 있다. 급박한 상황 시 부분 작업중지, 반복 지적 등을 통해 강력하게 개선을 지도하고, 사전 MOB(Mobilization)¹⁾ 및 중량물 인양계획(Rigging Plan) 검토와 함께 현장의 모든 건설장비를 빠짐 없이 점검한다.

1) 공사 수주 시점부터 현장소장 및 현장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의 협조 아래 현장 개설 및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위해 이루어지는 제반 준비작업

CSO 산하와 별개로 '기술안전지원팀'은 구조기술사 등 9명의 전문가가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현장의 가(假) 시설물이나 땅속·물속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설계 및 구조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한다.



안전보건회의체와 안전소장제도로 철저한 안전관리

매월 첫째 주 월요일 CSO가 주관하는 전사 차원의 'QHSE(Quality Health Safety Environment)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수행본부 본부장과 유관부서 임원, 팀장들이 지난달에 있었던 안전보건 이슈, 정부 및 동종사 안전보건 관련 동향, 안전점검팀 월간점검 결과를 피드백하며 주요 안전보건 정책을 신속하게 의사 결정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CSO가 주관하는 '기술안전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안전 및 품질환경 담당자, 유관부서 안전팀장 등이 참여해 기술안전지원팀이 실시한 지난주의 현장 기술안전점검 결과를 놓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가장 중요한 회의는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CEO 간담회'다. CEO가 직접 참여해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피드백한다. 안전보건정책 현황부터 단기·중기·장기 추진계획, 예산 및 인력 투자, 안전관리 강화방안까지 간담회에서 도출된 안건은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제도화하고 전사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5곳의 건축 및 인프라 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안전소장제도'는 올 1월, 간담회를 통해 CEO가 직접 제안해 4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대심도 터널, 장대 교량 등 24시간 교대작업을 하는 인프라 건설현장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안전소장은 이런 고위험 및 대형 현장에서 기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업무를 전담한다.

기술 역량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소장은 현장소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운영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현장 직원 및 근로자들의 반응이 좋아 하반기에는 2곳의 현장에 안전소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 및 포상 방침도 CEO 간담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의 협력사는 현장에 전문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협력사의 7개 위험공정(건축골조, 기계배관, 토공(토목/일반), 부대토목, 파일, 시스템 비계)을 선정하여 법적 기준 외에 안전만을 전담하는 안전 전담자를 선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보전해 주고 있다. 또 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협력사를 선정해 상위 2개사에는 단독 계약권 1회, 그 외 5개사에는 입찰 참여권 3회를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 회의체 운영체계

| 회의체 | 참여대상 | 운영 주기 |
|------------|---|------------------------|
| 기술안전운영위원회 | CSO / 각 공사 수행 실무자 / 안전담당 임원 및 안전 관련 팀장 / 기술안전지원팀장 | 매주 1회 |
| QHSE 운영위원회 | CSO / 임원급 경영진 / 각 공사 수행본부장 / 인사, 공무조달부서 등 | 매월 첫째 주 1회 |
| CEO 간담회 | CEO / CSO / 각 부서 본부장 등 | 격월 1회 |
| 안전보건간담회 | 공사 수행 본부장 / 공사수행임원 / 각 현장소장 / 현장 선임안전팀장 등 | 프로젝트 성격, 규모에 따라 주 1~2회 |

※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CEO 현장방문 점검 / CSO 및 전 임원 2인 1조 현장방문 점검